

# 장애인의 경제활동 특성 변화와 정책 과제

Changes in the Economic Activities of Disabled Koreans

이연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전문원

장애인의 취업은 장애인의 빈곤 탈출에 있어 주요 생계수단이며 비장애인과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격차를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요소가 된다. 그러나 장애인의 취업률은 우리나라 전체 취업률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전반적인 삶에 만족감을 높인다는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직무환경과 장애에 대한 편견 및 차별 등이 노동시장에 깔려 있어 경제활동 참여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 개선, 취업장애인의 건강관리지원, 맞춤형 고용 개입 등이 필요하다.

## 1. 들어가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으며(장애인복지법 제3조),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장애인복지법 제4조2항).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014년 기준 약 273만명으로 추정되었다. 교통사고, 만성질환 같

은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발생률이 2014년 기준 88.9%를 차지하는 만큼 장애발생 가능성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필요

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21조 1항). 장애인의 취업은 장애인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케 하는 것 외에도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사회적 책무를 일정부분 장애인 스스로에게 이양시킴으로써 자연스러운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선진국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취업률과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2014년 기준 15세이상 인구대비 전국 취업자 비율이 60.9%인 반면에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6%이며, 실업률에 있어서도 전국 실업률 3.5%인 반면에 장애인의 실업률은 6.2%<sup>1)</sup>에 달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다행스럽게도 어떤 이유에서든 미미하게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지만 반면에 실업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및 장애인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공공 직업알선기관을 통해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데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낮은 노동시장 참가율은 장애가 빈곤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경로의 하나가 된다<sup>2)</sup>.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은 높다<sup>3)</sup>. 특히, 장애인의 낮은 임금수준은 기초

생활보장급여나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부의 복지급여 가치보다 낮아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고, 나아가 이것이 근로 회피현상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복지급여시스템의 함정은 많은 고소득 국가에서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WHO,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여는 장애인 가구의 빈곤 탈출에 있어서 주요 생계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격차를 줄여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양질의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이다<sup>4)</sup>. 그러나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직무 환경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고용주의 편견, 고용의 차별 등이 노동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활동상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sup>5)</sup>.

본고는 2014년과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특성 변화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2.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현황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지난 1주간 활동을 보면,

1) 장애인 취업률 및 실업률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분석결과임.

2) 세계보건기구(2012), WHO 세계 장애 보고서, 한국장애인재단.

3) 이선우(2015),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8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심경순(2013), 정신장애인의 취업 및 직무수행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 45, pp.113-135.

5) 한애경·윤혜미(2012), 중증과 경증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영향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제22권 제3호, pp.153-161.

6) 이석원·허수정(2012), 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고용서비스가 장애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22권 제1호(통권 74호), pp.113-136.

2014년에는 2011년보다 ‘가사 일’과 ‘쉬었던’ 비율은 감소하였고, ‘일을 하였거나’와 ‘심신장애<sup>7)</sup>’ 비율은 증가하였다. <표 1>에 의하면, 지난 1주간 일을 했던 장애인의 비율은 2014년의 경우 경증 45.9%, 중증 23.5%로 나타나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2011년보다 조금씩 늘어난 것에 비해 심신장애

는 중증(35.4%)이 2011년(30.8%)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지난주에 경제활동을 했던 총 시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2014년은 2011년에 비해 다소 늘어났는데,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에 따라 상이하였다. 중증의 외부신체기능 장애인과 정신적

표 1. 장애정도별 지난 1주간의 활동 현황

구분	2011년			2014년		
	경증	중증	전체	경증	중증	전체
일하였음	44.3%	21.9%	35.4%	45.9%	23.5%	37.3%
일시휴직	0.1%	0.2%	0.2%	0.3%	0.1%	0.2%
구직활동	1.4%	1.0%	1.2%	1.4%	1.3%	1.4%
발령대기	-	0.1%	0.0%	-	-	-
육아	0.2%	0.3%	0.2%	0.3%	0.2%	0.3%
가사	10.3%	6.8%	8.9%	8.7%	4.3%	7.0%
정규교육기관 통학	0.7%	2.7%	1.5%	0.3%	3.8%	1.6%
입시학원 통학	-	-	-	-	0.1%	0.0%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	0.1%	0.9%	0.4%	0.1%	0.4%	0.3%
취업준비	0.3%	0.3%	0.3%	0.3%	0.6%	0.4%
진학준비	-	0.2%	0.1%	-	0.2%	0.1%
연로	19.6%	12.4%	16.8%	21.8%	11.6%	17.9%
심신장애	5.1%	30.8%	15.2%	6.1%	35.4%	17.3%
결혼준비	-	-	-	-	-	-
쉬었음	16.9%	21.5%	18.7%	14.5%	17.9%	15.8%
기타	0.9%	1.1%	1.0%	0.1%	0.6%	0.3%

자료: 1) 김성희외(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김성희외(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장애인의 경제활동 시간은 2011년보다 늘어났으나,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중증의 내부기능 장애인의 경제활동시간은 <표 1>의 심신장애 비율의 증

가와 맥락을 같이 하듯 2011년보다 줄어들었다. 반면, 경증의 외부신체기능 장애인의 경제활동시간은 차이가 없었으나, 내부기관 장애인의 경제

7) 심신장애는 정상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장기적인 질환, 정신·육체적 장애(수입이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는 사람

표 2. 장애유형별·장애정도별 지난 주 경제활동 총 시간

(단위: 시간)

장애유형	장애정도	2011년		2014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외부신체기능장애	경증	20.09	25.998	20.02	25.415
	중증	10.08	20.670	11.18	21.092
	소계	16.95	24.892	17.45	24.570
정신적 장애	중증	5.40	14.161	6.41	15.418
	소계	5.40	14.161	6.41	15.418
내부기관장애	경증	14.69	21.773	16.04	24.206
	중증	6.34	15.021	5.19	15.061
	소계	8.59	17.497	8.64	19.146
전체	경증	19.97	25.925	19.92	25.393
	중증	8.53	18.843	9.26	19.269
	합계	15.33	23.977	15.75	23.767

자료: 1) 김성희외(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김성희외(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동시간은 2011년보다 늘어났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84.8%는 자영업이나 일반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7.8%는 정부나 정부관련 기관에 근무하였다. 그 외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관련기관 등에 근무처를 가지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내부기관장애의 경우 일반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타 장애유형보다 월등이 높았으며, 정신적 장애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타 장애유형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경제활동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2014년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11년보다 줄었고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표 4참조). 임금근로자 중에서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경증 장애인의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014년 32.2%로 2011년 25.6%에 비해 크게 증가한 특징을 보이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임시근로자 비율이 2011년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특징을 나타냈다.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전반적으로 2011년보다 상승하였는데 [그림 1]을 보면 장애 정도에 따라 임금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임금근로자 중에서 경증 장애인의 임금수준 향상은 중증 장애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증 장애인의 150만

표 3. 장애유형별 현재 종사하고 있는 근로사업장 현황

장애유형	현재 일하는 곳	장애정도		
		경증	중증	합계
외부신체기능장애	자영업	40.7%	38.4%	40.3%
	일반사업체	46.7%	42.2%	45.8%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7.9%	8.2%	7.9%
	장애인보호작업장	-	1.0%	0.2%
	장애인근로사업장	0.2%	2.3%	0.6%
	장애인 관련 기관	0.5%	3.3%	1.0%
	기타	4.1%	4.6%	4.2%
	소계	100.0%	100.0%	100.0%
정신적 장애	자영업	-	22.1%	22.1%
	일반사업체	-	37.3%	37.3%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	6.1%	6.1%
	장애인보호작업장	-	16.9%	16.9%
	장애인근로사업장	-	10.5%	10.5%
	장애인 관련 기관	-	6.8%	6.8%
	기타	-	0.3%	0.3%
	소계	-	100.0%	100.0%
내부기관장애	자영업	31.8%	28.0%	30.3%
	일반사업체	53.6%	70.3%	60.4%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12.4%	-	7.3%
	장애인보호작업장	-	-	-
	장애인근로사업장	-	-	-
	장애인 관련 기관	2.3%	-	1.4%
	기타	-	1.7%	0.7%
	소계	100.0%	100.0%	100.0%
전체	자영업	40.5%	34.2%	39.0%
	일반사업체	46.8%	42.4%	45.8%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7.9%	7.4%	7.8%
	장애인보호작업장	-	4.6%	1.1%
	장애인근로사업장	0.2%	4.1%	1.1%
	장애인 관련 기관	0.5%	4.0%	1.3%
	기타	4.0%	3.5%	3.9%

자료: 김성희외(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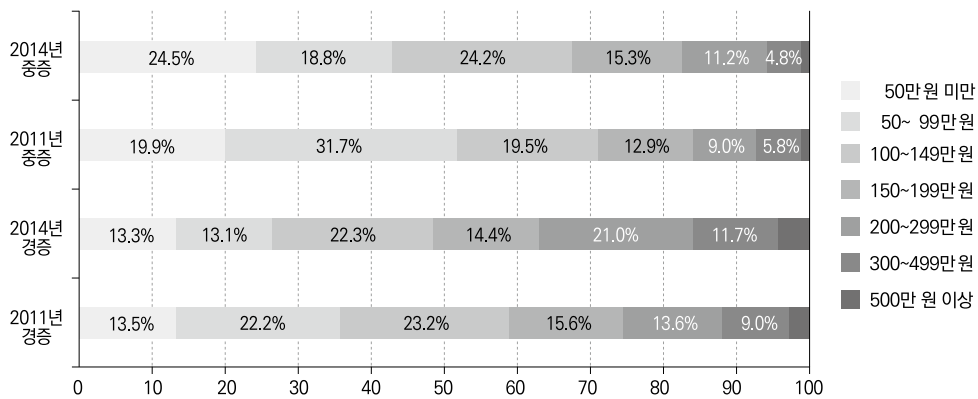
원이상 비율은 2011년 41.1%에서 2014년 51.3%로 증가하였고, 중증 장애인의 150만원이상 비율은 2011년 29.0%에서 2014년 32.6%로 증가하였다. [그림 1]에서 중증 장애인중 50만원미만의 비

표 4. 경제활동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		2011년			2014년		
		경증	중증	전체	경증	중증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25.7%	28.3%	26.3%	23.6%	25.9%	24.2%
	임시근로자	15.6%	18.8%	16.3%	15.8%	22.1%	17.3%
	일용근로자	23.3%	20.5%	22.6%	19.3%	17.0%	18.7%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5.6%	4.6%	5.4%	4.4%	3.2%	4.1%
	자영업자	25.6%	23.7%	25.1%	32.2%	25.2%	30.5%
	무급가족종사자	4.3%	4.1%	4.2%	4.8%	6.6%	5.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1) 김성희외(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김성희외(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1. 2011년과 2014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 도표



자료: 1) 김성희외(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김성희외(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율은 2011년보다 4.6포인트 증가한 24.5%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이 꼽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낮은 수입'으로 그 비율이 45.7%를 차지

할 만큼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높았다. 이것은 장애인의 지위에 있어서 수입이 일정부분 고정적으로 보장되는 상용근로자의 종사비율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반면,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전체의 24.7%만 차지하

표 5.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1순위

애로사항	장애정도		전체
	경증	중증	
낮은 수입	47.3%	40.8%	45.7%
직장 내의 대인관계	2.2%	3.3%	2.4%
승진문제	0.4%	0.4%	0.4%
업무과다	17.0%	12.5%	15.9%
직무관련기능 부족	1.4%	2.0%	1.6%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	0.9%	0.7%	0.9%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0.5%	2.6%	1.0%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2.0%	2.8%	2.2%
출·퇴근 불편	1.9%	3.9%	2.4%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1.1%	6.1%	2.3%
어려움 없음	24.8%	24.4%	24.7%
기타	0.6%	0.4%	0.5%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김성희외(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는 만큼 현재의 직장생활에서 불만이 있는 장애인이 더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 정도가 심하면 ‘직장 내의 대인관계’나 ‘차별대우’, ‘편의시설 미비’, ‘출퇴근 불편’,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에서 좀 더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장애인의 희망 일자리 및 직업훈련 특성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려 할 때 희망하는 고용의 형태는 장애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나 고용주와 같은 비임금 근로형태보다 임금 근로의 형

표 6. 장애인 실업자의 희망 일자리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2011년		2014년	
	경증	중증	경증	중증
임금근로	93.4%	94.7%	94.1%	100.0%
비임금근로	6.6%	5.3%	5.9%	0.0%

자료: 1) 김성희외(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김성희외(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태를 희망하였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의 장애인 중에는 비임금 근로형태를 희망하는 장애인도 5.9%를 차지하였다. 그 만큼 대다수의 중증 장애인은 안정된 고용형태를 원하지만, 경증 장애인 중에는 본인의 능력과 역량을 반영하는 비임금 근로형태를 추구하기도 한다.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업무는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일자리인데, 그 비율이 2011년 49.3%에서 2014년 36.3%로 줄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실업상태의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업무유형의 가장 큰 변화는 사무직이나 서

표 7.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업무유형

희망 업무	2011년			2014년		
	경증	중증	전체	경증	중증	전체
관리자	3.1%	7.0%	4.5%	4.8%	-	3.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6%	6.8%	6.7%	15.5%	8.7%	13.2%
사무종사자	3.7%	12.8%	6.9%	13.7%	21.7%	16.4%
서비스종사자	12.6%	4.6%	9.8%	6.3%	17.9%	10.3%
판매종사자	4.3%	1.5%	3.3%	4.4%	4.9%	4.5%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6%	-	0.4%	0.9%	-	0.6%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0.9%	13.0%	11.7%	5.8%	4.9%	5.5%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9.1%	4.5%	7.5%	9.9%	10.3%	10.0%
단순노무종사자	49.0%	49.8%	49.3%	38.7%	31.6%	36.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1) 김성희외(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김성희외(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비스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2011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것과 기능직을 희망하는 비율은 줄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장애인의 학력수준이 높아진 것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6.0%에 불과할 만큼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장애인들의 그 이유를

보면,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 아예 안 받은 비율이 52.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위는 ‘직업 훈련이 있는지 몰라서’ 받지 못한 비율이 19.6%로 파악되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직업능력(직업적응 훈련)을 개발(20.7%)’하는 것이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



표 8. 장애 이후 직업훈련 경험 및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구분	항목	비율(%)
직업훈련 경험	예	4.8
	훈련 중	1.2
	아니오	94.0
	소계	100.0
직업훈련 받지 않은 이유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	19.6
	등록절차를 몰라서	1.5
	심한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워서	15.7
	직업훈련비용이 부담되어서	0.7
	직업훈련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1.5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되어서	6.3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	52.6
	집 근처에 훈련기관이 없어서	2.0
	기타	0.2
	소계	100.0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가 할 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16.9
	취업정보 제공	18.7
	직업능력개발(직업적응 훈련)	20.7
	취업상담·평가·알선	12.2
	사후지도	2.0
	임금보조	16.5
	직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3.2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6.2
	업무보조서비스·근로지원서비스	3.4
	기타	0.2
	소계	100.0

자료: 김성희외(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으며, ‘취업정보를 제공(18.7%)’하는 것도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16.9%)’과 ‘임금보조(16.5%)’에 필요한 정책도 국가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해야 할 우선 과제로 꼽았다.

#### 4. 경제활동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 외에도 사회적관계를 형성하거나 확대시키는 중요 수단이 되며,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침으로써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주에 1시간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했던 장애

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의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경제활동 참여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1시간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한 장애인 중에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비율은 2014년 69.5%이고 경제활동 미 참여 장애인은 47.8%로 그 차이가 무려 21.7%포인트나 되었다.

장애인은 ‘가족들과의 관계’, ‘사귀는 친구들의

수’, ‘거주지’,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결혼생활’ 등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 비율보다 더 높았으나, ‘건강상태’, ‘한 달 수입’, ‘여가활동’ 등에서는 반대로 불만족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가족들과의 관계’ 및 ‘사귀는 친구들의 수’, ‘거주지’, ‘현재 하고 있는 일’, ‘결혼생활’, ‘건강상태’, ‘여가활동’ 등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보다 더 높은 만족

표 9. 장애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변화

내용	만족 수준	2011년			2014년		
		경제활동 <sup>1)</sup>			경제활동		
		미참여	참여	전체	미참여	참여	전체
가족들과의 관계	만족	78.1%	86.5%	81.0%	77.6%	87.6%	81.2%
	불만족	21.9%	13.4%	18.9%	22.3%	12.4%	18.7%
사귀는 친구들의 수	만족	54.4%	80.5%	63.4%	54.1%	80.3%	63.6%
	불만족	45.6%	19.5%	36.6%	45.9%	19.6%	36.5%
거주지	만족	68.9%	74.8%	70.9%	73.0%	75.4%	73.8%
	불만족	31.1%	25.3%	29.1%	27.1%	24.6%	26.2%
건강상태	만족	27.7%	52.3%	36.2%	25.7%	48.5%	33.9%
	불만족	72.4%	47.7%	63.8%	74.2%	51.5%	66.1%
한달 수입	만족	19.8%	29.4%	23.6%	28.4%	29.7%	29.0%
	불만족	80.1%	70.6%	76.5%	71.5%	70.3%	71.1%
여가활동	만족	35.2%	47.8%	39.6%	39.5%	48.8%	42.8%
	불만족	64.7%	52.3%	60.4%	60.6%	51.2%	57.2%
현재 하고 있는 일	만족	54.1%	56.7%	56.7%	45.8%	61.9%	61.6%
	불만족	45.9%	43.3%	43.3%	54.2%	38.2%	38.5%
결혼생활	만족	80.9%	87.9%	83.9%	80.7%	88.4%	84.2%
	불만족	19.0%	12.1%	16.2%	19.2%	11.6%	15.9%
현재의 삶	만족	46.0%	66.7%	53.2%	47.8%	69.5%	55.6%
	불만족	54.0%	33.3%	46.8%	52.2%	30.5%	44.4%

주: 경제활동 여부는 지난주 1시간이상의 주업이나 부업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로 구분한 것임.

만족은 매우만족+약간 만족 비율이며, 불만족은 약간 불만족 + 매우 불만족 비율임.

자료: 1) 김성희외(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김성희외(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도를 보였다. 반면에,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비율은 경제활동 참여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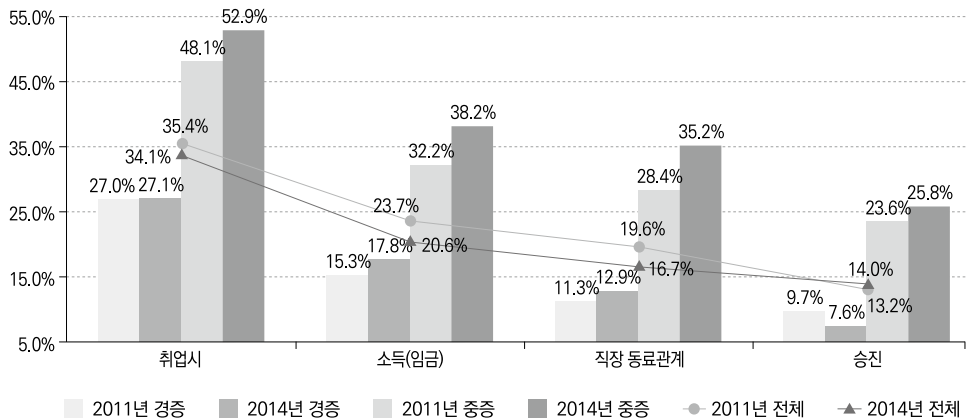
각 영역별 만족도에 대해 2011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2014년도에 더 높았으며,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2014년도 경제활동 참여 장애인의 만족도 증가율은 그 폭이 미참여 장애인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2011년보다 올랐지만, 경제활동 미참여 장애인의 만족도가 경제활동 장애인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예컨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인의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2011년 만족비율 19.9%에서 2014년 28.4%로 약 8.5%포인트 증가하였지만, 경제활동

장애인의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 비율은 2011년 29.4%, 2014년 29.7%로 큰 차이가 없었다. 장애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양상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2014년도 ‘건강상태에 관한 만족도’는 2011년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5. 장애인의 취업 및 직장생활 차별 경험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장애정도를 막론하여 비장애인보다 쉽지 않다. 수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과 편견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의지를 떨어뜨린다. <표 10>에 제시하였듯이 장애인의 일부는 취업이나 직장

그림 2.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자료: 1) 김성희외(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김성희외(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취업 시 차별 경험은 2011년 34.1%에서 2014년 35.4%로 약간 증가하였다. 더욱이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취업에서의 차별 경험이 더 컸다.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의 취업 시 차별 경험은 2014년 52.9%, 2011년 48.1%이고, 경증은 2014년 27.1%, 2011년 27.0%로써 중증 장애인의 취업 시 차별 경험이 경증보다 훨씬 높았을 뿐 아니라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점차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23.7%(2014년)는 소득(임금)에서 차별을 경험했고, 또한 직장 동료 관계에 있어서의 차별 경험도 19.6%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13.2%는 승진 시 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장애인의 취업과 직장생활에 대한 차별 경험에 대해 2011년과 2014년 두 해를 비교해보면, 최근 승진에 대한 차별 경험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취업이나 소득, 동료관계에 대한 차별 경험은 조금씩 증가하였다. 장애정도를 나눠서 살펴볼 때, 중증 장애인의 차별 경험은 2014년 모든 요소에서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직장 동료관계'에 있어서 차별 경험비율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에 경증 장애인의 '승진' 시 차별 경험비율은 2011년보다 감소하였다.

## 6. 정책 과제

2011년과 2014년 2개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특성의 변화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장애 정도에 따라 경제활동 특성이 달랐을 뿐 아니라 3년 사이에 특성의 변화도 발견되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 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 가. 기업체의 장애 인식개선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대비 2014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6%로 2011년 35.5%보다 1.1%포인트 증가하기는 했으나 2014년 전국 취업자 비율 60.9%와 비교해보면 아직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취업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에 있어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2011년보다 감소하였고, 자영업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런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취업 장애인은 직장에서의 지위가 불안해졌음을 의미한다.

2012년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은 조직 적응력, 동료 직원 간의 의사소통 능력, 업무추진 시 협동심, 대인관계 등에서 비장애인보다 떨어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능력이나 생산성, 지시를 따르는 능력, 성실성 면에서도 비장애인 근로자보다 떨어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보다 미고용 기업체에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 즉, 이것은 장애인을 경험하지 않은 채 장애가 근로에 방해가 된다는 편견과 오해에 의해 장애인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다. 장애는 당연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불편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전혀 불편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정도가 사회생활에서 치명적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기회는 비장애인과 평등해야 한다. 편견으로 인해 근로의 기회를 애초부터 박탈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체의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려면 장애인을 채용해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할 동기부여, 즉 장애인 고용에 따른 기업체의 다양한 보상체계 정책도 동시에 요구된다.

#### 나. 맞춤형 고용개입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조금씩 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중증 장애인의 지난주 경제활동 시간은 경증 장애인의 1/2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중증 장애인은 공개노동시장에서 비장애인과 경쟁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업상태의 중증 장애인들은 경증 장애인보다 임금근로형태의 지위에 종사하기를 더 바랄 뿐 아니라 업무유형에 있어서 사무종사자나 서비스종사자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중증 장애인들은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낮은 수입(40.8%), 업무과다(12.5%),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6.1%), 출퇴근 불편(3.9%), 직장 내의 대인관계(3.3%),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2.8%), 장애인에 대

한 차별대우(2.6%), 직무관련기능 부족(2.0%) 등을 꼽았다. 따라서 장애정도, 업무능력, 개인의 관심과 재능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취업만 알선하는 것은 고용 실패를 경험하는 장애인에게 자괴감을 키워주고 근로복귀를 포기하는 꼴이 될 수 있다. WHO(2012)에 의하면, 장애인의 취업알선은 구인 요건에 구직자를 맞추는 직업알선 모델에서 개인의 관심과 재능을 고려하는 ‘사람중심’ 모델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이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낮은 수입에 대한 불만은 근로능력에 준하는 임금이 보상되지 않거나 혹은 근로에 따른 임금기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취업알선기관은 장애정도, 업무능력, 장애유형, 건강상태, 적성, 성격, 지역 등 개인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는 사람 중심의 맞춤형 고용 개입이 필요하며, 맞춤형 고용개입을 통한 취업은 능동적인 직장생활을 가능케 할 것이고, 업무성과에 따른 임금기대치 간의 간극을 좁혀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유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경제적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 다. 직장에서의 차별 개선

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sup>8)</sup>.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취업 시’, ‘소득(임금)’, ‘동료관계’ 등 직장생활에서의 차별도 2011년보다

8) 김성희(2015), 장애인의 차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26호.

증가하였으며,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차별을 체감하는 비율은 더욱 높았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그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경제활동 미 참여자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 만큼 경제활동 참여는 장애인 스스로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나, 심리적으로 이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편견과 차별이 아닐까 생각된다. 직장에서의 차별은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업무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이 직장생활에 적응하고 그들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장애인 스스로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근무하기 용이하도록 직무와 작업장을 조정하여 고용상의 차별을 줄이고, 생산적인 노동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강제하고 있어 공식적인 부문에서의 차별이라면 어느 정도 법 준수를 통해 해소시키고 있지만, 사적·개인적인 부문에서의 차별, 즉 편견은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 개인의 태도이므로 이들이 가지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에 대한 긍정적 정서는 장애인에게 동료 간, 친구 간, 가족 간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시켜 사회생활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 라. 취업 장애인의 적극적 건강관리지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건강을 챙길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밖에

에 없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제활동 참여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만족도는 비경제활동 장애인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건강상태 만족도는 더욱 낮았다. 장애인은 지속적인 장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장애로 인한 합병증과 만성질환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자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리어 건강악화에 따른 고부담의 치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들은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로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적응 훈련’의 필요성을 가장 강조했다. 결국 장애인의 직업적응 훈련은 장애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그럴 경우에 맞춤형훈련이 가능해진다. 일례로 영국의 근로복귀프로그램은 개개의 장애인에게 조연자들이 있어 구직과 직무훈련을 돕고 장애나 건강상태 관리를 지원한다(WHO, 2012). 이처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장애와 관련된 건강상태 관리는 2년마다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보편적 건강검진 수준보다 정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 장애인의 종합건강검진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장애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